

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2. 9. 10.

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절차상 하자의 여지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시행시기를
「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행코자 함

2. 수정 주요내용

- 부칙 “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
“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로 수정

3. 참고사항

- 「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」

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.	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명하여야 한다”를 “명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8시까지로 한다.”를 “8시까지의 범위 이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

제14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련 법령]

□ 「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의2(법령의 시행유예기간)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, 대통령령,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